

의안번호	제 49 호
의결연월일	2007. 11. 23. (제 141 회)

의결사항

##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총무위원장
제출연월일	2007. 11. 16.

#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49 호
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7. 11. 16.  
제 출 자 : 총무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07. 5. 11)되고, 같은 법 시행령도 전부개정(2007. 10. 4)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의2 → 제34조(안 제1조)

「동법시행령」 제15조의3 → 제35조(안 제1조)

2)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15조 → 제33조 (안 제2조)

나. 정확하고 자연스런 문장의 구성

1) oo조의 규정에 의한 → oo조에 따른

2) oo조의 규정에 의하여 → oo조에 따라

3) 각호의 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,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3조 · 제3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거창군의회 조례 제 호

###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 “직무“라 함은” 을 “ “직무“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 “의정활동비“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율” 을 “ “의정활동비“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 “유족“이라 함은” 을 “ “유족“이란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 “장애“라 함은” 을 “ “장애“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 “상해“라 함은” 을 “ “상해“란” 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각호의 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과 제2항, 제4조제1항, 제6조제1항 및 제10조 본문 중 “각호”를 각각 “각 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5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정의) (생략) 1. (생략) 2. “ <u>의정활동비</u> ”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 3.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“ <u>의정활동비</u> ”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-----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 4. (생략) ② 제1항 <u>각호</u> 의 “직무”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“공무상재해인정기준”에 준한다.	제3조(보상금 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 -----
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 ~ 3. (생략) ② 제1항 <u>각호</u> 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	제4조(보상금 지급기준) ① ----- ----- <u>각 호</u>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 <u>각 호</u> 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“장애”라 함은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45조에 규정된 “폐질등급”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.</p> <p>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“상해”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	<p>제5조(장애와 상해의 기준) ① ----- ----- “장애”란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“상해”란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보상금의 청구) ① ----- ----- 각 호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</p> <p>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	<p>제10조(심의회 기능) ----- 각 호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

# 관 계 법 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34조 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(제61조 단서에 따라 개최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)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33조 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
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4조 (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)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심의회"라 한다)는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 학계·법조계·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명씩 선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. 다만, 「공직선거법」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·의회의원·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·직계존비속·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금액을 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되,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,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.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, 주민의견 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⑦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.
- ⑨ 그 밖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